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3년 07월 14일

상하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 조치 사항 직권 조치 일자
노 *정	노 *정 1978-05-22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47번길 (상하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6-05